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협력

GS칼텍스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나인트리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GS칼텍스 장혁수 제품부문장(왼쪽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이경호 사업이사, 해양수산부 윤현수 국장, 부산항만공사 이상권 부사장, 울산항만공사 정순우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칼텍스



SK에코플랜트-테르메그룹, 기술교류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그룹과 '인천 골든하버 부지 리조트 개발·시공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왼쪽 세 번째), 로버트 하네아 테르메그룹 회장(네 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기보-케이뱅크, 비대면·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MOU

기술보증기금이 케이뱅크와 '디지털·비대면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삼육대, 이민희 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삼육대학교 학생명과학과 이민희(4학년) 학생이 '제21회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삼육대는 지난 19회, 20회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육대 학생명과학과 4학년 이민희 학생(왼쪽)과 김일목 총장이 대통령과학장학증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육대

부록

▲민경재씨 별세, 최완용 씨 부인상, 최원철·원재·수정·문정 씨 모친상, 김현재·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씨 장모상, 김동은 씨 시모상 = 10일, 대전시 충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정수원-대전추모공원. (042-280-8181)

▲이양순(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씨 별세, 이민숙씨 남편상, 이환석(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씨 부친상, 홍성옥·홍수진(약사)씨 시부상, 이상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윤호·이윤재씨 조부상 = 9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58-5940

피의자 참여권 보장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한편, 피해자나 증거는 니범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돼야 하는 것과 견줘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대해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호돼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 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이 용촬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들고 나온 휴대전화 2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2대 중 해당

/법무법인 바른